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5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한 사항

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은 1만원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로서 법 제5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로 최초 지급정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

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급정지 등 종료 사유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지급정지 조치가 되었으나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사기이용계좌에 대해서도 제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. 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피해구제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
피해자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전자우편주소	
신청내용	피해자 계좌의 송금·이체내역	금융회사	개설점포	예금종별
		계좌번호		명의인
		송금·이체일시	금액	
	사기이용계좌 입금내역	금융회사	계좌번호	명의인
		입금일시	금액	
	피해환급금 입금계좌	금융회사	계좌번호	명의인

피해구제 신청사유
※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 ○ ○ 금융회사 귀하

첨부서류	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1부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

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
※ 아래 내용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확인을 위해 자율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, 해당 신고 항목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피해구제 신청에 불이익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
피해자 전화번호	피해자 이동통신사 SKT[] / KT[] / LGU+[] / 기타()	
전기통신금융사기이용 전화번호(발신자)	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 통화시각 또는 문자 수신시각 년 월 일 시 분	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수신유형 전화[] / 문자[] / 기타()
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전화를 건 번호 (※ 사기범이 알려준 번호로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사기범과 통화 한 경우 기재)		
신청인 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		

금융감독원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(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의3), 전화번호 변작여부 확인, 수사협조를 위하여 아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 동 업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◆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및 제공 동의서

[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(필수사항)]			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	보유기간*
신고인의 전화번호, 신고인의 통신사, 발신번호, 수신시각, 이메일 주소	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, 변작확인 및 피해예방 홍보		10년 또는 관련 규정에 따름
* 보유기간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, 수사협조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해서만 이용됩니다.			
※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, 거부하실 경우 관련 업무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			
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 ☐ 부동의			
[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(필수사항)]			
제공받는 자	제공 목적	제공 항목	보유 기간*
금융감독원, 미래창조과학부, 한국인터넷진흥원, 검찰, 경찰	전화번호 이용중지, 변작 확인, 금융사기 피해예방, 수사참고자료 활용	신고인의 전화번호, 신고인의 통신사, 발신번호, 수신시각, 이메일 주소	제공후 10년 또는 관련 규정에 따름
* 보유기간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, 수사협조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해서만 이용됩니다.			
※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, 거부하실 경우 관련 업무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			
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 ☐ 부동의			

◆ 상기 신고내역에 대한 통화내역 등 증빙자료를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였습니다.

확인책임자(직급/성명) :

(서명 또는 인)

첨부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) ① (생략)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공시는 14일 이상 하여야 한 다. 1. ~ 3. (생략) <u>4. (신설)</u>	제5조(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4. 법 제5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 라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한 사항</u>
제6조(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) ①~② (생략) <u>③ (신설)</u>	제6조(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) ①~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은 1만 원으로 한다.</u>
제8조(지급정지 등의 종료)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. 1.~2. (생략) <u>3. (신설)</u>	제8조(지급정지 등의 종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~2. (현행과 같음) <u>3.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 인 경우로서 법 제5조에 따른 채 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 로 최초 지급정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974